

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처리기한 : 접수일로부터 7일

신 청 인 카 드 정 보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(거주지)					
	휴대전화번호	(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:)				
	제휴카드	☐ NH농협카드(해당 은행 계좌 보유 필수) ☐ 신한카드 ☐ 체크카드 ☐ 신한카드 ☐ 신한카드 ☐ 체크카드				
신청방법	☐ 현장신청 (체크카드만 가능) ☐ 전화신청 ☐ 모바일신청					
	계좌번호	은행명	☐ 농협 ☐ 신한 ☐ 우리 ☐ SC제일 ☐ 우체국 ☐ 국민 ☐ 기타 ()			
		계좌번호	(예금주명:)			
지원대상		제출 서류 및 담당자 확인사항				
☐ 실업자		·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(고용보험 취득여부 등)				
☐ 생계·자활급여 수급자		· 기초생활수급증명서(조건부수급자)				
☐ 여성가장		· 가족관계증명서				
☐ 고3 재학생		· 학교장 승인서				
☐ 대학졸업예정자		·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				
☐ 농어업인(가족)		·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				
☐ 군전역예정자		·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(보훈청 발급)				
☐ 외국인	결혼이민자, 이주청소년	· 외국인등록증 ·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				
	난민인정자	· 난민확인서				
	피보호자격상실자	· 외국인 등록증				
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		·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증명서				
☐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		·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(고용보험 취득여부 등)				
☐ 기간제근로자		· 근로계약서				
☐ 단시간근로자		· 근로계약서				
☐ 파견근로자		· 근로계약서				
☐ 일용근로자		·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				
☐ 이직예정인 근로자		· 이직예정확인서				
☐ 9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		· 무급휴직확인서				
☐ 45세 이상 또는 월임금 300만원 미만 대규모 근로자		· 최근 3개월 간 월별 급여명세서				
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		·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(HRD-Net 확인)				
☐ 육아휴직근로자		· 육아휴직확인서				
☐ 일학습병행근로자		· 일학습병행제 근로계약서				
☐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피보험자		·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				
☐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		·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· 급여이체내역				
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		· 고용센터 확인(고용보험 취득여부 등)				
☐ 영세자영업자	일반과세자	· 사업자등록증(휴업사실증명원) ·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			
	간이과세자	·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(면세사업자의 경우) ※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				
	신용회복지원확정자	· 사업자등록증				
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		·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				
☐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		· 위촉(재직)증명서 ·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				
		·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				

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(지)청장 귀하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(뒤쪽)

신청자격 확인사항

1. 계좌발급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?(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 포함)
[]예 []아니오
2.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?
[]예(사업장명: , 업종: , 개업연월일:) []아니오
3.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,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까?
[]예(해당학교, 대학원의 최종학년: , 졸업예정시기: 년 월) []아니오
[]주간대학 []방송대학 []통신대학 []방송통신대학 []사이버대학
4. 신청일 현재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입니까?
[]예 []아니오
5. 신청일 현재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·용자의 제한처분을 받아 지원·용자 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?
[]예 []아니오
6. 신청일 현재 정부(지방자치단체 포함)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(훈련과정명 또는 사업명과 상관없이 지금 신청하는 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 의미)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습니까?
[]예 ※ 훈련(사업)명: , 참여기간 년 월 ~ 년 월 []아니오

본인은 위와 같이 신청자격 관련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위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, 수강 또는 지원·용자의 제한,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듣고 모두 이해하였습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 최종학력 (필수) ※본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.					
[] 초등학교	[] 중학교	[] 고등학교	[] 2~3년제 대학교	[] 4년제 대학교	
[] 대학원(석사)	[] 대학원(박사)	[] 학점은행제	[] 무학	[] 기타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’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※ 아래 란은 고용센터 담당자 업무를 위한 사항으로 적지 않습니다.

※ 접수	접수 연월일	접수번호	처리부서	선 람	소(과)장	팀장	담당
※ 처리	[] 발급 [] 미발급 (사유:)						
※ 결재	담당	팀장	소(과)장	결재 연월일			